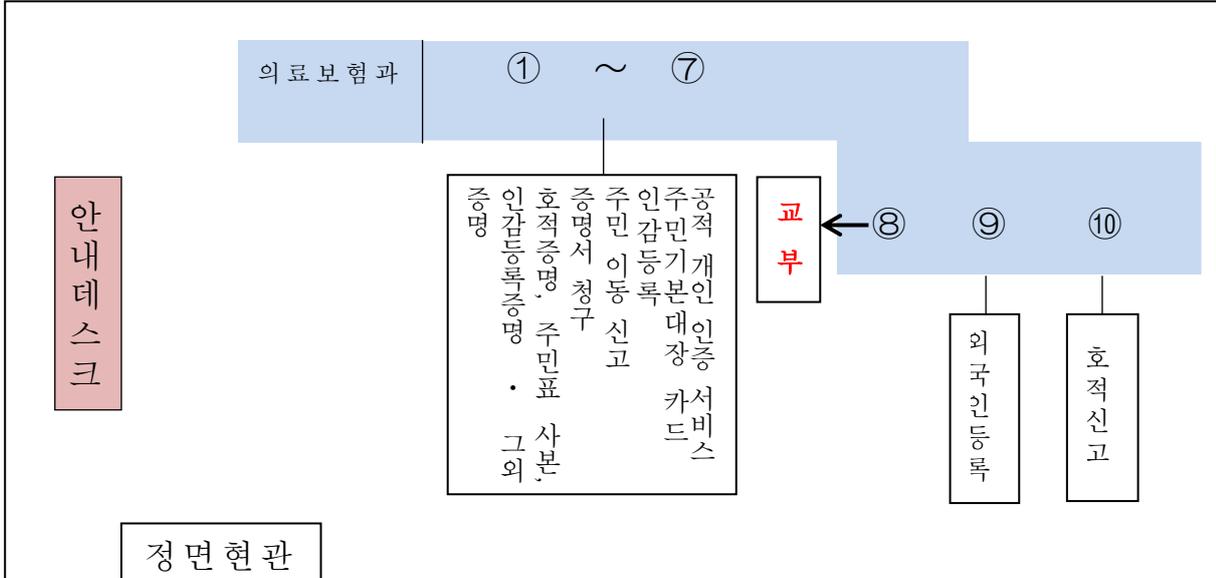


제4장 여러 가지 수속

신고와 증명

절차를 지켜서 정확하게

■ 호적주민과 창구 안내(사세보시청 1층)



■ 지소·우쿠 행정센터

신고와 증명의 수속은 호적주민과 외에 각 지소·우쿠 행정 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각 지소·우쿠 행정센터 안내는 P096~P105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전입, 전출 신고 등 ◆ ⇒ 호적주민과

사세보시에 전입하거나 타지역으로 전출 할 경우에는 주민 이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종류		신고 기간	신고인	수속시 필요한 준비물
전입신고	사세보시에 전입한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본인 혹은 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주소지의 전출증명서 개호수급자, 전기·후기 고령자 의료부담구분 등의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연금수첩 (가입자에 한함) 주민기본대장 카드 (해당자에 한함)
전출신고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이사 예정일 14일 전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에 한함) · 고령수급자증 (해당자에 한함) 후기고령자 의료피보험자증(수급자에 한함) · 개호보험증(해당자에 한함) 주민기본대장 카드 (해당자에 한함)
주거지 변경신고	시내에서 주거지를 변경한 경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에 한함) · 고령수급자증 (해당자에 한함) 후기고령자의료피보험자증(수급자에 한함) · 개호보험증 (해당자에 한함) 주민기본대장카드 (해당자에 한함)
세대변경	세대주 변경 세대 분리·합병	해당 사실이 발생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에 한함) 고령수급자증(해당자에 한함)

수속 시에 창구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혹은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 호적 신고 등 ◆ ⇒ 호적주민과

혼인 및 출생 등 호적에 관련된 사항은 수속에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도록 합시다. 또한 호적 신고시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하여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본인확인이 필요한 신고 :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양자등록신고, 협의이혼신고, 인지신고 등**).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에 호적 신고가 있었음을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아울러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의 휴일·야간 신고는 **시청(야간·휴일전용 접수 창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류	신고인	신고기간	신고장소	신고에 필요한 준비물	기타
출생 신고	부모, 동거인, 의사, 조산사, 그 외의 입회자 순	출생 후 14일 이내	신생아 부모 중 한 쪽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태어난 곳의 행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서 1통 신고인의 인감 출생증명서(출생신고서의 오른쪽에 있음) 모자건강수첩 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에 한함) 	
혼인 신고	당사자	신고 당일부턴 효력 발생	당사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행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서 1통 당사자의 인감 신고하는 행정 기관이 본적지가 아닐 경우 호적등본 혹은 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인 2명 (성년일 것)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필요
이혼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 재판에 의한 이혼일 경우는 재판 신청인 확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상대방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당일부턴 효력 발생 재판에 의한 이혼일 경우는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행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서 1통 당사자의 인감 신고하는 행정 기관이 본적지가 아닐 경우 호적등본 필요 재판에 의한 이혼일 경우 조정조서의 등본, 재판 혹은 판결일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등본과 확정증명서(재판신청인의 인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인 2명 (성년일 것) 재판에 의한 이혼일 경우 증인은 필요하지 않음
이혼 후에 성을 변경할 경우	이혼 후에 성명을 성을 바꾸고자 하는 당사자	이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행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서 1통 신청인의 인감 신고하는 행정 기관이 본적지가 아닐 경우 호적등본 필요 	
입적 신고	입적자 (입적자가 15세 미만일 경우 법정 대리인)	신고 당일부턴 효력 발생	입적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행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서 1통 신고인의 인감 신청하는 행정 기관이 본적지 또는 입적하는 호적지가 아닐 경우에는 각각의 호적등본 (가정법원의 허가서) 	
전적 신고	호적의 제일 처음에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 및 배우자	신고 당일부턴 효력 발생	전적지, 본적지 및 주소지의 행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서 1통 신고인의 인감 호적등본 1통(동일 시 안에서 전적할 경우에는 불요) 	
사망 신고	친족, 동거인, 집주인, 땅주인, 가족 및 토지의 관리인, 후견인, 보좌·보조인, 임의후견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	사망한 분의 본적지,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사망한 장소의 행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서 1통 신고인의 인감 사망진단서(사망 신고서 오른쪽에 있음) 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에 한함) 연금수첩 	
매장 및 화장 허가 신청	사망신고의 신고인	사망신고 시	사망신고를 제출한 행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서 1통(시외에서 화장한 경우 화장장의 명칭과 주소지를 확인할 것) 신청인의 인감 	

◆ **인감등록** ◆ ⇒ 호적주민과

▷신규 인감등록

등록 자격은 만 15세 이상의 사세보시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있는 분입니다.(인감등록이 가능한 의사능력이 있을 것)

▷사세보 시민 카드(인감등록증)에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자동 교부기에서 증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등록과 발행	필요한 준비물
본인이 인감과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은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할 때	바로 등록이 가능하며 인감등록증명서도 땔 수 있습니다	①등록할 인감 ②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명서 사진이 붙은 신분증명서란 운전면허증, 여권, 재류카드 및 주민기본대장카드(사진이 붙은 것) 등으로 유효기간이 남은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인감을 지참하여 보증인의 보증서에 의해 본인 확인이 가능할 때		①등록할 인감 ②보증인의 인감등록증 및 등록인 ※보증인은 현재 사세보시에서 인감등록이 되어 있는 분에 한합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은 유효한 신분증명서가 없을 때)	등록이 될 때까지 다소 시일이 걸립니다	①등록할 인감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주소로 조회서를 송부합니다. 회답서와 등록할 인감,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다시 방문해 주시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신청한 다음날 부터 14일 이내)
대리인이 신청할 때 (본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방문할 수 없을 때)	등록이 될 때까지 다소 시일이 걸립니다	①등록할 인감 ②대리인 인감 ③본인 자필 위임장(용지는 시청 혹은 각 지소, 우쿠 행정 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해 본인 주소로 문서로 우송 조회합니다. 해당

		문서(회답서)와 인감과 대리인 확인이 가능할 것(운전면허증 등)을 대리인이 지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신청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	--	--

▷ 등록할 수 있는 인감은 1인 1개입니다.
 등록할 수 없는 인감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십시오.

▷ 인감 및 인감등록증을 분실하였을 때
 ⇒ 호적주민과 혹은 각 지소·우쿠 행정센터 창구에 비치된 인감등록폐지신고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시 인감을 등록하실 때에는 새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 주민기본대장카드 ◆

◎ 주민기본대장카드(주기카드)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 기관에서 간단하게 교부 받을 수 있는 안전성이 뛰어난 IC카드 입니다. 주기카드는 증명사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증명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인 신분증명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교부신청 방법 ⇒ 호적주민과
 현재, 사세보시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창구
 호적주민과, 각 지소·우쿠 행정센터
 ※ 교부는 호적주민과와 우쿠 행정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필요한 준비물
 • 인감
 • 증명사진(사진이 붙은 카드를 희망하시는 분에 한함)
 ※ 가로 3.5cm, 세로 4.5cm(여권용 증명사진과 같은 사이즈)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고 배경이 없는 얼굴사진
 • 본인확인서류
 • 수수료(500엔)

▷ 유효기간
 10년간

▷ 교부에 관하여
 당일 교부는 교부를 희망하는 본인이 호적주민과로 직접 신청하여,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고 유효기

간이 남은 신분증명서)를 지참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수일 뒤 교부됩니다.

▷그 외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호적주민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적개인인증 서비스** ◆

◎ **공적개인인증 서비스란**

IC카드(주민기본대장카드 등)을 이용하여 자택 컴퓨터의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 기관 신청 및 수속 등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카드리더·라이터가 필요합니다.

◎ **교부신청 방법** ⇒ 호적주민과

현재, 사세보시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창구

호적주민과

※각 지소·우쿠 행정센터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준비물

- 주민기본대장 카드
-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고 유효기간이 남은 신분 증명서(사진이 있는 주민기본대장 카드도 가능)
- 수수료(500엔)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3년간

▷교부에 관하여

당일 교부는 교부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여,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는 면허증 및 여권 등)을 지참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수일 뒤 교부됩니다.

▷그 외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호적주민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증명서」는 주소 이동(시내 이사를 포함)및 이름이 바뀐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시 한 번 신청하여 주십시오(유료)

◆ **증명서 교부** ◆

◎ **증명서 교부 수속** ⇒ 호적주민과

주민표 사본, 호적사항 및 개인 사항 증명, 각종 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창구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창구에서 신청하실 때는 신청자 본인확인서류(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증명서	주의사항	수수료
주민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혹은 동일세대원에 해당되지 않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필요 	1통 300엔
호적사항 증명 개인사항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분,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 ② 정당한 이해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원 등의 관공서에 제출하는 경우 ④ 상속관계 증명에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외의 경우에 청구할 때에는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분의 위임장이 필요 	호적사항 증명 개인사항 증명 1통 450엔
호적부표 사본		호적부표 사본 1통 300엔
제적 및 개정 전의 호적등본·초본		1통 750엔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재사항증명용지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사세보시 지정 양식도 있습니다) 	1통 300엔
인감등록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등록증 필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록자의 인감등록증, 주소, 성명 필요 	1통 300엔
신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 필요 본적지가 사세보시인 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1통 300엔

※ 호적사항증명 = 등본, 개인사항증명 = 초본

※ 청구자 본인이 서명할 경우 인감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휴일·야간 박스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휴일이나 야간에도 주민표 사본 등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청 및 각 지소(요시이, 세치바루, 고사자, 에무카에, 시카마치 제외), 시마노세초 경찰관 연락소 옆 등 13개 장소에 공중전화박스 모양의 접수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방법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함께 교부수수료, 우표를 붙인 반환용 봉투 및 본인 확인서류(면허증, 보험증 등의 사본)을 전용봉투에 넣어 투입하여 주십시오. 신청서 및 반환용 봉투, 전용 봉투는 박스안에 상비되어 있습니다. 우표는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여 주십시오.

○ 신청 가능한 경우

- ① 주민표 사본 ⇒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 ② 호적사항증명·개인사항증명
⇒ 사세보시에 호적을 둔 본인 혹은 동일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분

◎ 호적, 주민표 사본은 우편청구도 가능합니다.

호적의 등본 및 초본, 주민표 사본 등은 우편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서, 수수료 (소액우편환), 본인확인서류(면허증, 보험증 등의 복사본), 반환용 봉투를 동봉하여 호적주민과로 발송하여 주십시오.

◎ 시청 업무 시간 외에도 인감 증명, 주민표 사본 수취가 가능합니다.

시청 업무 시간 내에 교부 대상자 본인이 전화로 예약하여 주십시오.

전화예약으로 교부 가능한 증명서	전화예약 및 교부 대상자	수취시 필요한 준비물
① 인감등록증명서	등록자 본인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확인서류 (전화 예약 시 약속한 본인확인서류) • 인감등록증 • 수수료
② 주민표 사본	본인 또는 동일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확인서류 (전화 예약 시 약속한 본인확인서류) • 수수료
③ 조세 또는 공적 과세에 관한 증명서, 토지 또는 건축물 등 자산에 관한 증명서 및 공적 장부의 등본	본인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확인서류 (전화 예약 시 약속한 본인확인서류) • 수수료

- 전화예약 접수시간 : 평일 8:30~16:30
 - 전화예약 접수 장소 : ①, ②의 경우 ⇒ 호적주민과
③의 경우 ⇒ 시민세과 증명창구
Tel 0956-24-1111(대표전화)
 - 교부장소 : 사세보시청 야간·휴일 전용 접수창구
 - 교부시간 : 평일 17:30~20:00
토, 일, 공휴일 9:00~17:00
- ※ 단, 12월 29일 ~ 1월 3일(연말연시)에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세금

시에서 징수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기 위해

◆ 세금의 종류 ◆

- ◎ 시에서 징수하는 세금에 관해서는 ⇒ 시민세과
⇒ 자산세과
⇒ 납세과
⇒ 보험료과

◎ 세금의 종류

시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호적 및 주민등록, 사회복지, 쓰레기 및 분뇨처리, 질병 및 공해 예방, 학교 교육, 도로 및 공원 정비 등 보다 원활한 시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세보시에서 과세하는 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세의 종류

	시 민 세	개인시민세	개인의 전년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균등(균등할과 소득할)
		법인시민세	법인규모 및 법인세를 기초로 부과하는 세금(균등할과 법인세할)
보 통 세	고 정 자 산 세	토지, 가독 및 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경 자 동 차 세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륜 소형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세금	
	시 담 배 세	담배 제조업자, 특정 판매업자, 도매 판매업자가 시내의 소매점에 판매한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특 별 토 지 보 유 세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거나 취득하였을 때 부과되는 세금 (2008년도부터 신규과세정지)	
목 적 세	도 시 계 획 세	시가지화구역내의 토지, 가옥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입 욕 세	광천욕장 입욕 시에 부과되는 세금	
	국 민 건 강 보 험 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세금	

보통세 : 세수입의 용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세보시의 일반적인 경비로서 사용할 수 있는 세금.

목적세 : 세수입의 용도가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경비로서 정해져 있는 세금으로, 일반 경비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세금. 즉,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 추진, 국민건강보험세는 국민건강보험사업, 입욕세는 관광시설 및 소방 시설 정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됨.

○기타 세금

국세 — ①소득세 ②법인세 ③소비세 ④상속세 ⑤증여세 등
국세에 관한 상담 ⇒ 사세보세무서 Tel 22-2161

현세 — ①현민세 ②사업세 ③부동산소득세 ④자동차세 등
 현세에 관한 상담 ⇒ 현북진흥국 세무부 Tel 23-1386

◆ 시세에 관한 증명과 등본 교부 및 열람 ◆ ⇒ 시민세과
 시세에 관한 증명, 등본 교부, 열람은 시청, 각 지소, 우쿠 행정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가옥증명서・현황도는 시청에서만, 지도(字圖:토지대장 등에 쓰이는 지면, 면적 등을 표시하는 지도)는 시민세과 및 우쿠 행정센터에서만(우쿠 행정센터는 관내 지도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면허증, 주기 카드, 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합니다.

◎ 증명 교부 및 열람 청구가 가능한 분

①본인(공유자 포함) ②본인 이외(위임장・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증명 종류, 수수료

- 소득과세증명, 납세증명 _____ 1통 300엔
 -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 _____ 1통 300엔
 - 무자산증명 _____ 1통 300엔
 - 자산증명, 평가증명, 공과증명 _____ 1필, 1통 300엔
 ※ 단,토지는 1필, 건물은 1동이 추가될 때마다 100엔 추가
 - 지도(字圖) 등본, 열람 _____ 1장(열람은 1권) 300엔
 - 공부(公簿) 등본, 열람 _____ 1장 300엔
 - 조세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주택용 가옥 증명 - 1건 1,300엔
- ⓐ 문의처 : 시민세과 증명 창구

◆ 시세의 감면과 유예 ◆

- ◎ 시세 부담이 감면되는 경우 ⇒ 시민세과
 ⇒ 자산세과
 ⇒ 보험세과

재해 등에 의하여 생활이 곤란한 경우 및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납세가 유예되는 경우 ⇒ 납세과
 ⇒ 보험세과

재해 등에 의하여 시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납세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중복 납세한 경우 ⇒ 납세과
 ⇒ 보험료과

시세의 경우 과세액보다 많게 혹은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하여 드립니다. 환급 통지서와 수취 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보내드리게 되므로 확인하신 후 수취하여 주십시오.

- ◎ 납세를 잊어버리지 않아 편리한 자동이체제도 ⇒ 납세과, 보험료과
 예금 계좌를 지정하시면 해당 금융 기관에서 자동적으로 이체하여 납부됩니다.
 필요한 수속은 시내의 금융 기관, 우체국, 시청의 납세과와 보험료과, 각 지소, 우쿠 행정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납부 용지, 예금 통장, 해당 통장의 인감을 지참한 후 계좌를
 보유하신 은행 등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 자동이체 가능한 세목 : 시현민세(개인의 보통징수분), 고정자산세, 경자동차세,
 국민건강보험세

◎ 연간 납부 일정(시세)

세금 종류	시민세, 현민세(보통징수)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경자동차세	국민건강보험세 (보통징수)
납부월	6월, 8월, 10월, 1월	4월, 7월, 9월, 12월	5월	6월~3월 사이 매달